

## 아시아의 경관계획제도 비교 및 경관교육 추진\*

백태경<sup>1\*</sup> ·山下三平<sup>2</sup>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ndscape Planning System of Asia\*

Tae-Kyung BAEK<sup>1\*</sup> · Sampei YAMASHITA<sup>2</sup>

#### 요 약

본 연구는 아시아 각국 중 활발히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경관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함을 목적으로 했다. 경관법 제정 후의 우리나라의 경관법(2008.3)과 일본의 경관법(2004.6) 그리고 그 조례와 시행사례를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472개의 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1일 현재 83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의 경관법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칙과 벌칙규정이 없고 일본의 경관법에는 경관지구조항이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관계획 또는 경관제도의 확립 및 발전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주요어 : 경관법, 경관계획제도, 데이터베이스, 경관지구

#### ABSTRACT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landscape planning system in Korea and Japan by establishing the landscape database utiliz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Specifically, landscape laws and their ordinances enacted in Korea and Japan and their implementation cases were compar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s of December 1, 2010, landscape administrative bodies are composed of 472 local governments in Japan while as of March 1, 2010, they are 83 local governments in Korea. The landscape laws in Korea and Japan have a similar structure overall. However, there are no supplementary provision and penal provision in the

2012년 12월 11일 접수 Received on December 11, 2012 / 2013년 2월 13일 수정 Revised on February 13, 2013 / 2013년 2월 20일 심사완료 Accepted on February 20, 2013

\*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013-2009-D00129).

1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Dept. of Urban Engineering, Dong-Eui University

2 九州産業大學 都市基盤디자인공학과 Dept. of Civil & Urban Design Engineering, Kyushu Sangyo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E-mail : tkbaek@deu.ac.kr

Korean landscape law whereas there is landscape district provision in the Japanese landscape law.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be used as a base for building up the landscape planning and policy in the East Asian region.

**KEYWORDS** : Landscape Law, Landscape Planning System, Database, Landscape District

## 서론

본 연구는 2004년~2008년도에 실시한 일본 九州産業大学(Kyushusangyo Univ.) 학술 프론티어 추진사업 「인간-환경계통의 매개체로서의 경관 프로세서에 관한 학제적 연구」를 발전적으로 승계하는 내용이며 그 일부를 국제공동연구로서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와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는 경관에 관한 중요한 법 정비 등이 연속해서 실시되었다.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정책 요강 발표(2004년), 경관법의 전면적인 시행(2006년), 문화적 경관을 다루기 위한 문화재 보호법의 개정시행(2006년), 및 관광입국추진 기본법 시행(2008년)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동향에 맞추어 한국에서도 경관법이 시행되었다(2008년 11월). 이들의 움직임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있어서 아름다운 경관의 형성·보전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의 확산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한국과 일본만이 아닌 인근의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경제 발전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아름다운 경관 형성·보전이 중요시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연구 성과와 경관을 둘러싼 최근의 사회동향을 토대로 본 연구는 아시아 각국 중 활발히 경관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경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경관제도를 비교하고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데이터베이스(DB)상에서 경관행정단체로의 접근이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DB 구축에 사용한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는 ArcGIS Desktop 9.3.1과 ArcView GIS 3.2a이다. 경관데이터 베이스에는 경관계획수

립여부, 계획수립일자, 시도이름, 시도코드, 시군구명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 경관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면 어느 시군이 경관계획을 수립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향후 경관지구 등의 공간적 경계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데이터베이스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우리나라 전국 시군구경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ArcView 상에서 상기 5가지속성을 입력하여 구축하였다.

## 선행연구 고찰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서주환과 박대우(2005)는 한국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경관형성조례의 실태파악 및 경관형성조례 제정현황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경관형성조례 제정을 위한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김대수(2005)는 경관계획의 세부항목으로서 색채에 착목하여 「경관계획」 세부항목의 지침들이 실제적인 경관개선의 실천방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토목공학분야에서 경관연구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1963년(S.Kurihara; 일본토목학회 논문집)으로 이를 기점으로 경관연구의 축적은 40여년으로 볼 수 있다. 2004년에는 경관법이 제정되어 경관행정단체인 지자체에서는 지역독자의 풍경보전을 위해 경관계획 등의 시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에 Shibata *et al.*(2009)은 일본의 경관법 성립 전후인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10년간 발표된 경관연구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목적별로 계보를 작성하여 경관연구의 동향을 고찰하고 있다. Takada Nakai(2002)는 형성지구에서의 신고제도에 착안하여 먼저, 형성지구의 전체상을 파악하여 분류했다. 또한, 그 기준과 신고제도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다음

으로, 신고제도의 운용실태를 중심으로 경관 유도의 실태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그 유용성을 검증하고 있다. Hata *et al.*(2002)은 외국인 및 일본인에 의한 大阪梅田(Osaka Umeda)지구에서의 경로탐색 사례의 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탐색행동의 차이점에 착안하여 외국인 특유의 문제를 밝히고 있다. Miyawaki and Kitahara(2002)는 도시계획 행정 그대로 용도지역제에 적합한 광역경관계획 기술을 제안하고 있다. Ikeda and Kodama(2006)는 경관법제정이전의 경관조례의 공작물 정의와 경관법 제정후의 경관조례의 공작물 정의와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그 경향과 과제를 밝히고 있다.

한편, Fujimoto(2008)는 지금까지 요강으로 실시해온 지자체 중에서 더욱 영향력이 큰 도시인 札幌시(Sapporo City), 横浜市(Yokohama City), 大阪市(Osaka City), 広島市(Hiroshima City)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Oda and Matsumoto(2008)는 경관계획에 정해진 규제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경관법에 기초한 경관계획의 현황을 밝히고 있다. Yamashita *et al.*(2008)은 경관지구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 지정이유와 제한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경관지구의 단기적인 운용실태의 파악에 의해 경관지구 지정시의 유의점을 밝히고 있으며 Honda와 Funahashi(1998)는 경관의 형태적 성질에 따른 「집단」에 대하여 성질이나 요인을 폭 넓게 검토하고 있다. 또, 위에서 얻은 형태적 「집단」의 성질과 색채적 「집단」의 성질과 비교·종합해 형태적 「집단」의 공통성이나 차이점을 명확히 한 뒤에, 경관에서의 「집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경관제도 비교

경관법 제정후의 우리나라의 경관법(2008.3)과 일본의 경관법(2004.6) 그리고 그 조례와 시행사례를 우리나라와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했다(그림 1). 또, 경관계획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도시로서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일본 큐슈지방의 北九州市(Kitakyushu City)와 2008년 4월에 경관행정단체로 된 久留米市(Gurume City)를 참고로 선정했다. 우리나라는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도서울시와 제2의 도시인 부산시를 참고하여 경관제도를 비교분석했다.



FIGURE 1. 연구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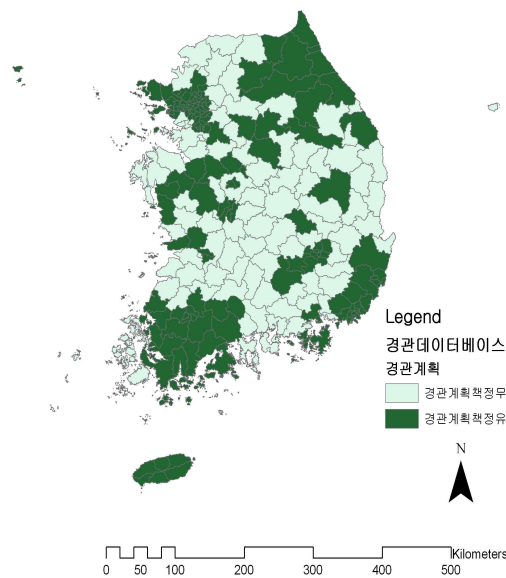


FIGURE 2. 우리나라의 경관행정단체 (2010.3)

1. 경관행정단체 현황

한국과 일본의 경관제도를 비교함에 있어서 참고할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은 경관계획을 들 수 있다. 그 경관계획을 작성하는 주체가 경관행정단체이기에 한일 양국의 경관단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경관행정단체란 경관법에 의해 정의된 경관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정령지정도시 또는 중핵도시에 있어서는 각각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가,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都道府縣 (이하; 한국의 경우 道·특별시·광역시) 이 그 역할을 맡는다. 단, 경관법에 근거한 규정의 사무처리를 도도부현지사와 협의한 뒤에 동의를 구한 시정촌의 구역에 있어서는 그들 市町村 (이하; 한국의 경우 시·군·구)이 경관행정단체가 된다. 경관행정단체는 경관법에 기초한 항목에 해당하는 구역에 경관계획을 책정할 수 있다. 경관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건축이나 건설 등 경관에 관련되는 개발을 행할 경우에는 설계나 시행방법 등을 경관행정단체에 신고할 의무가 생긴다. 일본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472개의 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이다(표 1-1, 2 그림 3).

일본의 경우는 [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25.html](http://www.mlit.go.jp/toshi/townscape/toshi_townscape_tk_000025.html)에서 경관행정단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각 시도별 자치법규 중 경관조례 등을 직접 조사해서 정리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1일 현재 83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이다(표 2, 그림 2). 우리나라의 경우는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아서 경관조례가 책정되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다. 경관행정단체의 수적인 면에서 보면 압도적으로 일본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관제도를 40년 전부터 도입한 일본의 경관행정역사와의 차이점이라 사료된다.

TABLE 1-1. 일본의 경관행정단체 일람 (2010년 12월 1일 현재)

| 都道府県 | 행정단체 정령시·중핵시·기 타  |
|------|---|
| 北海道  | •札幌市,旭川市,函館市,小樽市,清里町,美瑛町,平取町,東川町,長沼町,当別町,黒松内町,釧路市   |
| 青森県  | •青森市,八戸市,弘前市  |
| 岩手県  | •盛岡市,平泉町,一関市,北上市,遠野市,奥州市  |
| 宮城県  | •仙台市,登米市,松島町  |
| 秋田県  | •秋田市,横手市,仙北市,小坂町  |
| 山形県  | •酒田市,鶴岡市,大江町,長井市  |
| 福島県  | •郡山市,いわき市,南会津町,三春町,会津若松市,白河市,喜多方市   |
| 茨城県  | •つくば市,守谷市,水戸市,牛久市,桜川市   |
| 栃木県  | •宇都宮市,日光市,小山市,那須町,足利市,高根沢町,那須塩原市,佐野市  |
| 群馬県  | •前橋市,伊勢崎市,富岡市,高崎市,太田市,板倉町,中之条町,草津町  |
| 埼玉県  | •さいたま市,川越市,戸田市,八潮市,草加市,秩父市,新座市,川口市,三郷市,熊谷市,志木市,越谷市,春日部市,和光市                                     |
| 千葉県  | •千葉市,船橋市,柏市,市川市,市原市,我孫子市,浦安市,館山市,佐倉市,流山市,松戸市,茂原市  |
| 東京都  | •世田谷区,府中市,新宿区,江東区,足立区,杉並区,墨田区,港区,町田市,目黒区  |
| 神奈川県 | •川崎市,横浜市,横須賀市,相模原市,真鶴町,平塚市,小田原市,秦野市,鎌倉市,逗子市,藤沢市,茅ヶ崎市,座間市,大和市,箱根町,大磯町,湯河原町,葉山町,三浦市,海老名市,厚木市,伊勢原市 |
| 山梨県  | •山梨市,韮崎市,南アルプス市,北杜市,甲州市,市川三郷町,早川町,富士河口湖町,小菅村,忍野村,山中湖村,甲府市,笛吹市                                   |
| 長野県  | •長野市,小布施町,松本市,飯田市,高山村,佐久市,諏訪市,千曲市,茅野市   |
| 新潟県  | •新潟市,新発田市,佐渡市,上越市,南魚沼市,   |
| 富山県  | •富山市,高岡市  |
| 石川県  | •金沢市,加賀市,七尾市,輪島市  |
| 岐阜県  | •岐阜市,各務原市,多治見市,中津川市,美濃市,可児市,下呂市,大垣市,高山市,白川村,飛騨市,恵那市,美濃加茂市,瑞穂市                                   |
| 静岡県  | •静岡市,浜松市,熱海市,富士市,三島市,伊東市,下田市,沼津市,新居町,富士宮市,袋井市,掛川市,牧之原市  |
| 愛知県  | •名古屋市,豊橋市,岡崎市,豊田市,犬山市,長久手町,瀬戸市,半田市,常滑市,一宮市  |
| 三重県  | •伊賀市,四日市市,松阪市,伊勢市,鈴鹿市   |

TABLE 1-2. 일본의 경관행정단체 일람 (2010년 12월 1일 현재)

| 都道府県 | 행정단체   | 정령시 · 중핵시 · 기타 |
|------|--|----------------|
| 福井県  | •小浜市, 大野市, 勝山市, 福井市, 永平寺町, 池田町<br>越前市, 坂井市, 鯖江市, 敦賀市, あわら市   |                |
| 滋賀県  | •大津市, 近江八幡市, 高島市, 彦根市<br>守山市, 長浜市, 栗東市   |                |
| 京都府  | •京都市, 宇治市, 南丹市, 長岡京市, 福知山市, 宮津<br>市  |                |
| 大阪府  | •大阪市, 堺市, 高槻市, 東大阪市, 箕面市, 豊中市, 太<br>子町, 吹田市, 岸和田市  |                |
| 兵庫県  | •神戸市, 姫路市, 尼崎市, 西宮市, 伊丹市, 三田市  |                |
| 奈良県  | •奈良市, 橿原市, 明日香村  |                |
| 和歌山県 | •和歌山市, 高野町   |                |
| 鳥取県  | •倉吉市, 鳥取市, 米子市   |                |
| 島根県  | •松江市, 津和野町, 大田市, 出雲市, 海士町  |                |
| 岡山県  | •岡山市, 倉敷市, 早島町, 新庄村, 瀬戸内市  |                |
| 広島県  | •広島市, 福山市, 三次市, 尾道市, 呉市, 廿日市市  |                |
| 山口県  | •下関市, 萩市, 宇部市, 光市, 山口市, 岩国市, 柳井市,<br>防府市, 下松市, 周南市   |                |
| 徳島県  | •三好市, 上勝町, 那賀町, 美馬市  |                |
| 香川県  | •高松市, 直島町, 宇多津町, 善通寺市<br>丸亀市, 多度津町, 土庄町, まんのう町, 小豆島町   |                |
| 愛媛県  | •松山市, 大洲市, 今治市, 宇和島市, 八幡浜市, 西予<br>市, 新居浜市, 西条市, 伊予市, 四国中央市, 久万高原<br>町, 上島町, 松前町, 内子町, 伊方町, 愛南町, 砥部町,<br>東温市        |                |
| 高知県  | •高知市, 梼原町, 四万十市, 四万十町, 中土佐町, 津<br>野町   |                |
| 福岡県  | •北九州市, 福岡市, 久留米市, 糸島市<br>豊前市, 八女市, 柳川市, 太宰府市, うきは市   |                |
| 佐賀県  | •佐賀市, 嬉野市, 唐津市, 武雄市, 小城市   |                |
| 長崎県  | •長崎市, 平戸市, 島原市, 新上五島町, 五島市, 佐世<br>保市, 南島原市, 小値賀町, 対馬市, 雲仙市   |                |
| 熊本県  | •熊本市, 山鹿市, 山都町, 天草市, 苓北町   |                |
| 大分県  | •大分市, 別府市, 由布市, 白杵市, 宇佐市, 日田市, 杵<br>築市, 中津市, 豊後高田市, 国東市  |                |
| 宮崎県  | •宮崎市, 日南市, 日向市, 綾町, 延岡市, 西都市, 椎葉<br>村, 西米良村, 日之影町, 高千穂町, 高原町, 小林市,<br>都農町, 都城市, 門川町, 串間市, 高鍋町, 美郷町                 |                |
| 鹿児島県 | •鹿児島市, 霧島市, さつま町, 出水市,<br>指宿市, 南種子町, 薩摩川内市, 長島町, 鹿屋市, 阿久<br>根市, 中種子町, 南大隅町, 西之表市, 志布志市, 錦江<br>町, 屋久島町, 南さつま市, 南九州市 |                |
| 沖縄県  | •石垣市, 浦添市, 那覇市, 宮古島市, 読谷村, 南城市<br>うるま市, 渡名喜村   |                |

TABLE 2. 우리나라의 경관행정단체 일람(1) (2010년 3월 1일 현재)

| 道 · 広域市 | 시군  |
|---------|---|
| 広域市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 京畿道     | •수원, 성남, 과천, 의정부, 구리, 안산, 안양,<br>부천, 의왕, 김포, 양주, 용인, 광명, 고양, 여주           |
| 江原道     | •강릉, 고성, 삼척, 속초, 양구, 양양, 영월, 원주,<br>인제, 춘천, 평창, 홍천, 홍성                    |
| 忠南道     | •진천, 청주, 충주, 증평   |
| 忠南道     | •공주, 아산, 천안, 예산   |
| 全北道     | •군산, 익산, 전주   |
| 全南道     |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담양, 목포, 무안,<br>보성, 순천, 영광, 영암, 완도, 장흥, 함평, 해남,<br>화순 |
| 慶南道     | •거제, 김해, 마산, 양산, 창원, 통영   |
| 慶北道     | •경주, 고령, 안동, 구미   |
| 濟州道     | •제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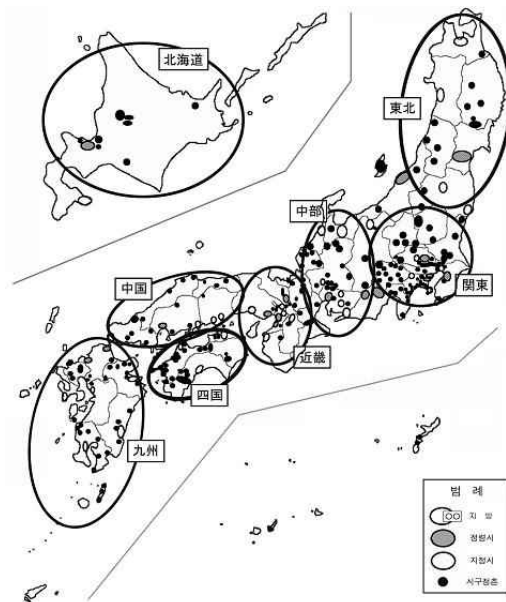


FIGURE 3. 일본의 경관행정단체 (2010.12)

## 2. 경관계획 비교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관제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항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면서 비교분석했다. 경관법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조항들을 비교한 것이 표 3이다.

일본은 총 7장 107조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총 5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양국의 경관법 시행령은 같이 1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칙과 벌칙 규정이 없고 일본의 경관법에는 경관지구조항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 각 조항별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

서 기술한다.

먼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형성,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창조 및 개성적이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체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통적으로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어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목적과 기본원칙·이념이 같기 때문에 양국의 경관법의 방향성이나 지침이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양호한 경관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형성과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창조

TABLE 3.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관법 체제 비교

| 일본의 경관법 (2004年 6月 18日)       |                              | 대한민국 경관법 (2008.3.21)         |                               |
|------------------------------|------------------------------|------------------------------|-------------------------------|
| 제1장 총칙<br>(제1조-제7조)          | 목적, 기본이념, 행무와 정의 등           | 제 1 장 총칙<br>(제 1 조-제 5 조)    | 목적, 정의, 기본원칙, 행무 등            |
| 제2장 경관계획<br>(제8조-제60조)       | 책정, 규제, 중요건축물, 중요 공공시설의 정비 등 | 제2장 경관계획<br>(제6조-제12조)       | 책정, 계획의 내용, 기초조사,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
| 제3장 경관지구<br>(제61조-제80조)      | 경관지구, 준경관지구, 건축물형태 등의제한      | 제3장 경관사업<br>(제 13 조- 제 15 조) | 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재정 등       |
| 제4장 경관협정<br>(제 81 조-91 조)    | 협정의 체결, 인가, 효력 등             | 제4장 경관협정<br>(제 16 조-22 조)    | 협정의 체결, 인가, 지원 등              |
| 제5장 경관정비기구<br>(제92조-제96조)    | 기구의 지정, 업무, 감독 등             | 제5장 경관위원회<br>(23조-제25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운영 등             |
| 제6장 부칙<br>(제 97-제 99 조)      | 권한의 위임 등                     |                              |                               |
| 제7장 벌칙<br>( 제 101 - 제 107 조) | 벌칙 등                         |                              |                               |

에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현재 및 장래에 걸쳐 국민공통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취지이다(표 4).

TABLE 4. 한일양국 경관법의 비교

| 구분            | 공통점   | 차이점   |
|---------------|---|---|
| 목적            |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창출하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일본 경관법 제1조)<br>(대한민국 경관법 제1조)   |   |
| 경관계획의 기본원칙·이념 |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수할 수 있어야 한다.<br>(일본 경관법제2조)<br>(대한민국 경관법 제3조)   |   |
| 정부 및 지자체의 책무  | • 국가는 국민의 이해를 돕도록 노력한다.<br>• 국민은 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br>(대한민국 경관법 제4조)   | • 일본의 경우 지자체·사업자의 책무·주민의 책무가 있음<br>(일본 경관법 제4,5,7조) |
| 내용            | •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br>•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br>•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의 수립<br>•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br>•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br>• 경관계획의 시공을 위한 자원조달 및 단계적인 추진<br>(대한민국 경관법 제8조)<br>(일본 경관법 제8조) | • 부산에는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다.<br>• 일본에는 경관계획구역이 있다     |

양국 다 정부의 책무는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계발 및 지식의 보급 등을 통하여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편, 일본은 정부

의 책무이외에도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서 양호한 경관형성의 촉진에 관해 정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그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인 제 조건에 따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의 책무는 토지이용 등의 사업 활동에 관하여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해야만 한다. 또한, 주민의 책무는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이해를 도모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은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 차이점은 일본은 지자체·사업자의 책무·주민의 책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국 공통적으로 주민·사업자의 책무는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경관계획은 경관행정단체가 양호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그 범위, 양호한 경관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또, 경관계획구역을 대상으로 경관중요건조물, 경관중요수목, 경관 협의회, 경관협정 등의 규제유도장치, 주민참가 장치 등의 법에 근거한 조치가 행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관계획이란 기본적으로는 경관행정단체가 경관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그 기본적인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경관계획의 특징은 경관행정단체의 독자성이 발휘되도록 경관행정단체의 재량으로 경관에 관한 규제내용 등을 선택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관법의 내용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의 책정·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이 공통점이다.

TABLE 5. 한일양국 경관법의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 공통점 | 차이점  |
|-----|--|
| -   | • 일본지자체의 경우,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의해 관리해야 한다.(대한민국 제12조) |

TABLE 6. 한일양국 경관협정의 내용

| 공통점   | 차이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체결자나 경관협정운영회의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i> <li>• 인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li> <li>-건축물의 의장·색채 및 옥외광고물</li> <li>-건축정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li> <li>-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li> <li>-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li> <li>-역사·문화적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경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대한민국 제16조)</li> <li>• 일본은 경관협정구역이 있다.</li> </ul> |

차이점으로는 일본에는 경관계획구역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을 들 수 있다.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를 표 5에 나타낸다.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목적 및 대상 지구에 대해서는 미관지구가 「시가지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고 이미 일정한 미관이 존재하고 있는 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반해, 경관지구는 「시가지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지구뿐만 아니라 현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되고 있는 지구라도 향후 양호한 경관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가려고 하는 지구에 대해서도 폭 넓게 활용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의해 관리해야 하고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이름이 바뀌었다. 경관협정제도를 표 6에 나타낸다. 경관구역내의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의 합의에 의해 당해 토지의 구역에 있어서의 양호한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는 제도이다. 경관협정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보다 나은 경관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규제를 행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로 적극적인 계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관협정운영회의의 설립은 우리나라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 관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간의 자주적인 기구로서 운영회(경관협정운영회)를 둘 수 있고 일본은 법률상에 규정이 없다.

경관협정인가의 공통점은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협정을 인가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바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에게 공람해야 한다.

경관협정의 변경은 경관협정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은 경관협정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에 의해 경관행정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협정의 폐지에 대해서도 양국의 공통점은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는 협정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지자체(경관행정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경관협정의 준수 및 계승에 있어서의 공통점은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관협정의 대상구역 중에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을 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 지위를 계승한다.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장이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상의 지원이 가능하고, 일본은 경관정비기구가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경관위원회의 설치조항을 보면 경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경관법상에는 조항이 없지만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관교육의 추진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행정과 학교 그리고 시민레벨에서 경관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정보는 일본 국토 교통성 <http://www.mlit.go.jp/crd/townscape/> 사이트에 자세히 정보를 발신하고 있다(그림 4 참조).



FIGURE 4. 일본의 경관교육 정보 사이트

### 결론 및 시사점

선행연구에서는 1) 경관을 둘러싼 과제에 관한 타 분야 연구자간의 체계적인 논의의 장 제공 2) 경관형성의 실행 가능한 프로세서 검토 3) 도시교외의 경관·(Middle landscape) 랜드 스케이프상 연구 4) 한일비교를 포함한 국제적인 경관비교연구 5) 경관정보의 축적·발신의 거점으로서의 「경관 라이브러리」 정비 6) 비오 톱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경관 계획 시나리오 제안을 포함한 지역연계·지역공헌이 실시되어 당초계획의 목적이 달성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관법 제정후의 우리나라의 경관법(2008.3)과 일본의 경관법(2004.6) 그리고 그 조례와 시행사례를 우리나라와 일

본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특징을 파악했다. 얻어진 식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일본에서는 2010년 12월 1일 현재 472개의 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이며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1일 현재 83지자체가 경관행정단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관제도를 40년 전부터 도입한 일본의 경관행정역사와의 차이점이라 사료된다.

두 번째로, 일본의 경관법은 총 7장 107조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총 5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양국의 경관법 시행령은 같이 1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칙과 별칙규정이 없고 일본의 경관법에는 경관지구조항이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경관법의 목적과 기본원칙과 이념이 유사하기 때문에 양국의 경관법의 방향성이나 지침이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양호한 경관은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토형성과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의 창조에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현재 및 장래에 걸쳐 국민공통의 자산으로 인식하여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취지이다.

네 번째로, 양국의 경관사업을 보면 지자체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 추진협의회(경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경관계획구역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경관행정단체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다섯 번째로,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장이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상의 지원이 가능하고, 일본은 경관정비기구가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앞으로 동아시아지역의 경관계획 또는 경관제도의 확립 및 발전에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KAGIS**

## 참고 문헌

- 김경수, 백태경. 2007. 학교시설이적지의 시설 입지 전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2):103-111.
- 김대수. 200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경관계획의 색채계획 비교 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19(3):41-50.
- 서주환, 박대우. 2005. 한국 지방자치단체 경관형성관련조례에 관한 연구-일본지방자치단체와 비교고찰을 통하여-. 농촌계획, 11(1):25-33.
- 이동현, 백태경. 2007. 경관시물레이션을 통한 건축물 높이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4):132-141.
- Baek, T.K. and T. Chishaki. 1999. GIS 데이터를 이용한 중고층 주거 전용지구 지정을 위한 지구선정과 그 평가수법 개발에 관한 연구. -동경도 문경구를 케이스 스터디로-. 도시계획, 일본도시계획학회 48(1):47-56.
- Yamashita, S. and N. Nakamura. 2007. Integrating geographic information into scenic assessment of a catchment basin, Proc. 7th IALE World Congress 7 /Part 1, pp.112-113.
- 高田 真·中井 検裕: 景観条例による景観誘導の実態と効果に関する研究—景観形成地区での届出制度に着目して— 2002年度 37回日本都市計画学会学術研究論文集 pp.349-354.
- 宮脇 勝·北原 理雄: 都市計画法の用途地域制と景観条例の景観地域区分の整合性に関する研究—千葉県柏市景観形成ガイドラインの事例— 2002年度第37回 日本都市計画学会学術研究論文集.
- 藤居 良夫·酒井 裕一: 街路景観評価に対する因果関係の分析 2002年度第37回 日本都市計画学会学術研究論文集. 藤本 政幸: 要綱による景観行政から 景観法に基づく景観行政の移行についての研究~札幌市`横浜市`大阪市`広島市を対象として~ 2008年9月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論文集 pp.711-712.
- 垣内 宏美·山崎 正史: 都市景観における「図」と「地」の認知現象に関する考察 2000年度第35回 日本都市計画学会学術研究論文集.
- 木多 道宏·舟橋 國男: 都市景観における視覚的「まとまり」に関する研究—形態的要因と色彩的要因による「まとまり」の考察— 1998年度第33回 日本都市計画学会学術研究論文集.
- 山下 泉·横内 憲久·岡田 智秀: 景観法に基づく景観地区の実態に関する研究—景観地区指定の理由と指定の際の留意点について— 2008年9月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論文集 pp.735-736.
- 柴田 久·石橋 知也: 目的別系統図にみる景観研究の動向~98年から07年を対象として~ 景観·デザイン研究論文集No.7 2009年12月, pp.122-132.
- 小田 憲治·松本 直司: 景観法に基づく景観計画の規制内容に関する研究 2007年7月までにおける50の景観計画を事例として 2008年2月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論文集 pp.673-676.
- 李東賢·加藤 晃規: 詳細計画制度と地区計画制度の展開に関する韓日比較1995年度第30回日本都市計画学会学術研究論文集 pp.409-414.
- 池田 真哉·児玉 達郎: 景観法の対象とする工作物についての考察 ~景観法制定以前の景観条例と比較して~ 2006年9月 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論文集 pp.353-354.
- 秦 丹尼·舟橋 國男·木多 道宏·李: 大阪梅田地区における外国人と日本人の経路探索事例の比較分析 2002年度第37回 日本都市計画学会学術研究論文集. **KAGIS**